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중소기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4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신용정보업

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다. 채권추심업

별표2 제1호의 은행 계정의 난외의 소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화대출약정,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배서어음,  
환매권부대출채권매각,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매입약정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매입약정 포함)

제2호바목 중 “리스크”를 “중 리스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단서 중 “45.”를 “46.”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1)(가) 중 “45.”를 “4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6호의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겸영업무) ①·② (생략)</p> <p>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2. (생략)</p> <p>3. <u>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u></p>	<p>제25조의2(겸영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중소기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u>」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u>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u></p>

모집대행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 5. (생략)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7. ~ 14. (생략)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신용정보업

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다. 채권추심업

7. ~ 14. (현행과 같음)